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박희승

소병훈 · 염태영 · 박홍배

이정문 · 서삼석 · 이수진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·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'환경성적 표지'와 '환경표지'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.

그런데 '환경성적표지'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'환경표지'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 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따라 현재의 '환경성적표지'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·탄소발자국·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,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 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(Product Environment Footprint, PEF) 용어와

유사한 '환경발자국'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6조ㆍ제18조 등).

법률 제 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·제1항·제2항제1호·제5항 중 "환경성적표지"를 각각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제19조제6호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·제1항·제2항 중 "환경성적표지"를 각각 "환경발자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환경성적표지가"를 "환경발자국이"로, "환경성적표지에"를 "환경발자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환경성적표지의"를 "환경발자국의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환경성적표지를"을 "환경발자국을"로하며, 같은 항 제3호·제4호 중 "환경성적표지"를 각각 "환경발자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환경성적표지"를 각각 "환경발자국" 발자국"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제5호 중 "환경성적표지"를 "환경발자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환경발자국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(인증을 신청한 자)는 이 법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(인증을 신청한 것)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기관이거나 인증심사원이었던 자는 이 법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호의2 중 "환경성적표지의 인증"을 "환경발자국의 인증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환경기술의 실용화) ① 정	제6조(환경기술의 실용화) ①
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	
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	
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	
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	
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8조에 따라 <u>환경성적표지</u>	4 <u>환경발자국</u>
의 인증을 받은 자	
5.・6. (생 략)	5. • 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)	제18조(<u>환경발자국</u> 의 인증 등) ①
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	
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	
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	
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	
전문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	
한다)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	
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	
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	<u>환</u>
는 <u>환경성적표지</u> 의 인증을 하	<u> 경발자국</u>
게 할 수 있다.	

-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
 (생 략)
- ③ ④ (생 략)
-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 정한 경우에는 <u>환경성적표지</u>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·⑦ (생 략)
- 제19조(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)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환</u> 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

(2)	
2. (현행과 길 ③·④ (현행 ⑤	:음) 과 같음)
	<u>환경발자국</u>
 ⑥·⑦ (현행 제19조(인증기된 	과 같음) 관의 지정취소 등)
1. ~ 5. (현형 6	 생과 같음) <u>환</u>

지 아니한 경우 7.·8. (생 략)

- 제20조(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)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·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<u>환경성적표지</u>의 인증을 받 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<u>환경</u> 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 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 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, 이에 맞게 작성 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 다.
 -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 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
7.·8. (현행과 같음)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등) ① <u>환</u>
<u> 경발자국</u>
<u>환경발자국</u>
<u>.</u>
② 환경발자국
환경발자국
③
- <u>환경발자국이</u>
<u> 환경발자국에</u>
4)
환경발자국의

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인증심사원) ① <u>환경성적</u> 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(이하 "심사원"이라 한다)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2조(환경표지 등의 사용)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<u>환경성</u> <u>적표지(이하 "환경표지등"이라한다)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·용기(容器)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.</u>

② (생략)

제23조(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)

- ① (생 략)
-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따라 <u>환경성적표지</u>의 인증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

· 제21조(인증심사원) ①	환경발자
<u> </u>	
② (현행과 같음)	• •
제22조(환경표지 등의 사	용) ① -
	<u>환경발</u>
<u> 자국</u>	
② (현행과 같음) 제23조(환경표지등의 약	기증취소)
제25조(천정표시중기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10月年/
②	
<u>환경발자국</u>	

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<u>환경성적표지를</u> 표시하여 유 통시키는 경우
- 3. <u>환경성적표지</u>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<u>환경성적표지</u>의 인 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

·
1. (현행과 같음)
2
히. 거 바 기 구 ○.
<u>환경발자국을</u>
3. <u>환경발자국</u>
4환경발자국
③
환경발자국
4
<u>환경</u>
발자국

경우여	에는	대통령령으로	. 정하는
바에	따라	공고하여야	한다.

⑤ (생략)

제30조(청문 등) ① (생 략)

-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<u>환경성적표지</u>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 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
- ③ (생략)
- 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 략)
 -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 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~ 4의4. (생 략)
 - 5.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,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: 환경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

· ⑤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청문 등) ① (현행과 같
<u>야</u>)
②
<u>환경발자국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(현행과 같음)
②
1. ~ 4의4. (현행과 같음)
5
<u>환경발자국</u>

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	
체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